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 16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8조)
-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3.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소방본부장

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 공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제13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주민 대표 및 사업장 관계자
2.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관리교육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노동관서·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 (조례) ☐ 화학물질관리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연평균 2,000천원 수준의 비용이 예상되며,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제출 사유에 해당됨.

4. 작성자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정재덕